# 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민원사항

유형	보험상품 안내관련
	A고객은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지인이었던 모집인 B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 받음
	모집인 B씨는 A고객에게 해당 상품은 목돈마련에 유리하고 자금인출이 가능하며, 은행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고객은 그 말을 믿고 청약 서에 서명함
내용	A고객은 상품설명서 및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지인이었던 모집인 B씨의 설명을 믿었기에 전달받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해지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최초 안내 받았던 내용과 달리 가입한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으며 지금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
	A고객은 가입 당시 사망보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도 못 느끼고 있다며 고객불만을 제기함
유의 사항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상품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 전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또한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 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 ▶ 상품의 특이사항

#### 문: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중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은 저해지기간 동안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계약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중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은 저해지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지만, 저해지기간 이후 일반형 수준으로 해약환급금이 증가합니다.

#### 〈저해지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문: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보험료는 다른 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가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에 납입하는 보험료(특약 보험료는 제외)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 료를 말합니다.
  - (2) 저해지기간 이후 기본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기본사망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있을 경우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이하 "사망회복 추가납입보험료"라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다음에 정한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 × 12 × 100% × 가입경과년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고, 이후 연계약해당일 기준으로 매1년이 경과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 문: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보험기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보험기간은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하며,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은 아래에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2보험기간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문 :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보험기간별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2. 제1보험기간 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질병사망보험금

3.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 문: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답: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까지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 저해지기간 중 추가계약자적립액(추가계약자적립액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 나. 저해지기간 이후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 다. 저해지기간 중 또는 교육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만 가능하며, 저해지기간 이후 또는 교육자금 지급이 완료되거 나 교육자금 지급 중지를 신청을 한 이후에는 추가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문: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에 건강체로 가입하기 위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답: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에 건강체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인 피보험 자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건강체할인특약II 가입시점에 "특별조건부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하고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20세 이상인 분

○ 비흡연 : 청약일 이전 최근 1년간 흡연사실이 없는 자

○ 혈 압 : 수축기 139mmHg 이하, 이완기 89mmHg 이하인 자

○ 체 격: BMI(Body Mass Index) 수치가 18.0~26.9인 자

\* BMI수치 = 몸무게(kg)/[키(m)×키(m)]

〈키 175cm 일 경우 m = 1.75〉

※ 건강체 가입 대상자는 청약시 「건강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첨부 (다만, 진단 계약의 경우 해당 진단 항목에 흡연검사 추가로 실시)

※ 건강체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입기준: 저해약환급금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건경	· 가체	표준	취
十世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세	213,000	201,000	216,000	202,000
30세	246,000	232,000	250,000	233,000
40세	285,000	269,000	290,000	270,000

#### 문 :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에 건강체로 가입한 후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

-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는 ①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건강체할인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건강체의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무)건강체할인특약॥는 장래에 대하여 해지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 ③ 계약자가 ②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건 강체 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①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②항 및 ③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문: "교보우리아이성장케어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답: "교보우리아이성장케어서비스"는 영아기부터 유아, 아동,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지원서비스와 독서 및 체험 등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대서비스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무)자녀생활보장특약 가입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본 서비스 내 제휴서비스는 각 서비스 제공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신청은 고객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고 서비스 이용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집니다.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제휴회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있습니다.

# ▶ 보험가입 자격요건

# 1. 보험종류

저해약환급금형, 일반형

- ※ 회사의 건강체 기준 부합여부에 따라 표준체/건강체 구분
- ※ 금리확정형/순수보장형/개인형

# 2. 보험기간

# ○ 주계약

종형구분	보험기간
저해약환급금형 / 일반형	종신

# ○ 선택특약

	구분	보험기간
종속특약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본인)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8771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자녀)	대상이 되는 특약의 납입기간
독립특약	(무)자녀생활보장특약	30세만기

<sup>※</sup> 다만, 특약별 보험기간은 회사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선택 가능합니다.

# 3. 보험료 납입기간

5년·7년·10년~20년

※ 다만, 특약은 주계약 납입기간 이내에서 계약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납입주기

월납

# 5. 가입나이

○ 주계약[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보험료	최저 가입	최고 가입가능나이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거해약환	한급금형	일반	<u></u> 上형	납입주기
	00 12	10 1 1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년납		78세	80세	77세	79세	
	7년납		77세	80세	76세	78세	
종신	10년납	만15세	76세	79세	74세	77세	월납
	11년납~15년납		73세	76세	71세	74세	
	16년납~20년납		70세	73세	68세	71세	

○ 종속특약[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보험(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본인)]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주계약의 납입기간	전기납	주계약과 동일	월납

○ 종속특약[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보험(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자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보험료	
모임기간		_ 포함표 급립기신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납입주기
	대상이 되는 특약의 납입기간	전기납	주계약과 동일	0세(태아제외)~15세	월납

- ※ 다만, 특약의 가입나이는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Ⅱ가 부가된 경우 최저 가입나이는 20세입니다.
- ※ 종속특약(보험료납입면제특약(본인))의 납입기간은 주계약과 동일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 ※ 종속특약(보험료납입면제특약(자녀))의 납입기간은 대상이 되는 특약과 동일하게 선택되어 야 합니다.
- ※ 주계약 일반형은 저해약환급금형(50%해지지급형)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하기 위한 종형으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6. 가입한도

최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다만, 보장급부별 기존 보험계약 통산금액 및 계약사항에 따라 주계약 가입한도 및 특약별 가입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7. 건강진단 여부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 제한 사항

# ▶ 상품의 구성

주계약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주계약 [저해약환급금형/일반형]
중속특약   선택특약		+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본인) +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자녀)
	독립특약	+ 무배당 자녀생활보장특약
제도성	성특약	+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Ⅱ + 무배당 사망보장증액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사후정리특약 + 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 + 보험료납입면제서비스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 계약승계특약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는 계약해당일 당시 피보험자(주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에 한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별도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따라 부가함으로써,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계약해당일 당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사업방법서,약관,보험료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므로,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가입시점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기초율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1. 주계약

## 1-1. 사망보험금

#### - 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 보험금 지급내용 [제1보험기간]

(기준 : 보험가입금액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제1호)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 로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보험금액 + 추가계약자적립액
질병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제2호)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 우	기본보험금액 50% + 1년경과 계 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 의 10% 씩 정액 체증 + 추가계약자적립액

# [제2보험기간]

(기준 : 보험가입금액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사망	기본보험금액
(약관 제3조 제3호)	하였을 경우	+ 추가계약자적립액

- 1. 피보험자가 저해지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교육자금보너스 계약자적립 액을 해당 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2. 기본보험금액은 저해지기간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저해지기간 이후에는 「기본사망보험금, 기본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사망회복 추가납입보험료 포함)」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00%에 기본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사망회복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4. 저해지기간 중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교육자금보너스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1-2. 사망보험금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사망보험금

(기준 :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u> </u>	<u> </u>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약관 제3조)	였을 경우	기본보험금액

- 1.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은 「교육자금 전환계약 기본사망보험금,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계약 자적립액의 101% 금액,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사망회복 추가납입보험료 포함)」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은 교육자금 지급에 따라 자동 감액된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서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 3. 교육자금 전환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4. 교육자금 전환계약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교육자금 전환에 의한 교육자금 지급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교육자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2.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본인)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보험료 납입면제(1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약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2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암납입면제 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 입기간 종료일까지의 주계 약의 기본보험료 및 이 특	
보험료 납입면제(3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 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 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 색증"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암납입면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에서 "암납입면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자녀)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보험료 납입면제(1형)	주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 거나 약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2형)	주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 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암납입면 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 았을 때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 입기간 종료일까지의 납입 면제 대상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면제(3형)	주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 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주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 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암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 단확정 받았을 때	을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에 한하여 면제

- 1. 이 특약에서 납입면제 대상계약은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 중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 2. 이 특약에서 "암납입면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무)자녀생활보장특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수속구신난보험금 (양과 제17조 제1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족구"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1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두"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독감치료보험금 (약관 제17조 제3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독감(인 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독감(인플 루엔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1회당 30만원		
호흡기질환수술비 (약관 제17조 제4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호흡기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호흡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별표 7) "특정수 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식중독입원비 (약관 제17조 제5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식중독"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식중독"의 직접적인 1일 이상 입원 지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일당 1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깁스치료보험금 (약관 제17조 제6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 는 재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10만원 (깁스치료 1회당)		
재해골절보험금 (약관 제17조 제7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 러짐) 제외]"이 발생하였을 경우	30만원 (골절발생 1회당)		
시각질환수술보험금 (약관 제17조 제8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시각질 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시각질환"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수술 1회당 30만원		
특정청각질환 수술보험금 (약관 제17조 제9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청 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청각질 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 았을 경우(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수술 1회당 3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VDT질 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VDT질환"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수술 1회당 30만원		
척추질환수술보험금 (약관 제17조 제11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척추질 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척추질환"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수술 1회당 3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만기 <del>환급금</del> (약관 제17조 제12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 지 살아있을 경우	(1형):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의 80% (2형):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의 90% (3형):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의 100%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3. '수족구진단보험금', '독감치료보험금', '시각질환 수술보험금', '특정청각질환 수술보험금', 'VDT질환 수술 보험금' 및 '척추질환 수술보험금'의 경우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간"이 란 계약해당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연 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4. 반복수술(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 등)에 대한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약관 (별표 7) "특정수술분류 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 5. 깁스치료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재해골절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발생 1회당 1회의 재해골절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7. "만기환급금"의 경우 계약자가 약관 제2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 ① 보험 당사자간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 제한
  -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 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사기에 의한 계약 관련 사항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제1호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립니다.

##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 사항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직업, 운전, 현재와 과거의 건강 상태, 신체장해 등)은 피보험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 니다.

## ◆ 보험료 산<del>출</del>기초

# ▶ 보장부분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10년 미만의 경우 연복리 2.75%, 10년 이상의 경우 연복리 1.75%, 특약의 경우 연복리 2.0% 입니다.

# ▶ 적용위험률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사망률				
기준나이	남 자		여 자		
	표준체	건강체	표준체	건강체	
20세	0.000290	0.000224	0.000210	0.000189	
40세	0.000830	0.000680	0.000560	0.000525	
60세	0.004120	0.003530	0.001770	0.001679	

## ▶ 적용해지율

## 적용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한 개인이 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 저해약화급금형에 적용한 해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연 해지율 : 최소 0.00% ~ 최대 9.91%
-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이후 종신까지 연 해지율 : 0%
- 다만, 일반형에는 적용해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무배당)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교보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주계약 저해약환급금형, 40세, 20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월납, 표준체, 교육자

금 전환비율 보험가입금액의 40%, 4회 지급, 계약해당일 기준

※ 단위 : 원

# 1. 남자 (월납보험료 290,000원)

경과년	납입보험료 (A)	해약환 <del>급금</del> (B)	교육자금	교육자금누계액 (C)	환급률 ((B+C)/A)
3개월	870,000	0	0	0	0.0%
6개월	1,740,000	0	0	0	0.0%
9개월	2,610,000	0	0	0	0.0%
1년	3,480,000	35,357	0	0	1.0%
2년	6,960,000	1,725,714	0	0	24.8%
3년	10,440,000	3,452,071	0	0	33.1%
4년	13,920,000	5,214,929	0	0	37.5%
5년	17,400,000	7,013,786	0	0	40.3%
7년	24,360,000	10,727,500	0	0	44.0%
10년	34,800,000	15,934,500	0	0	45.8%
15년	52,200,000	24,502,500	0	0	46.9%
19년	66,120,000	31,898,500	0	0	48.2%
20년	69,600,000	78,744,600	8,749,400	8,749,400	125.7%
21년	69,600,000	71,100,082	8,887,510	17,636,910	127.5%
22년	69,600,000	63,196,858	9,028,122	26,665,032	129.1%
23년	69,600,000	55,028,119	9,171,353	35,836,385	130.6%
25년	69,600,000	56,797,982	0	35,836,385	133.1%
30년	69,600,000	61,573,418	0	35,836,385	140.0%
35년	69,600,000	66,791,435	0	35,836,385	147.5%
40년	69,600,000	72,432,001	0	35,836,385	155.6%

# 2. 여자 (월납보험료 270,000원)

경과년	납입보험료 (A)	/ 해약환 <del>급금</del> (B)	교육자금	교육자금누계액 (C)	환급률 ((B+C)/A)
3개월	810,000	0	0	0	0.0%
6개월	1,620,000	0	0	0	0.0%
9개월	2,430,000	0	0	0	0.0%
1년	3,240,000	32,429	0	0	1.0%
2년	6,480,000	1,615,357	0	0	24.9%
3년	9,720,000	3,232,786	0	0	33.3%
4년	12,960,000	4,886,214	0	0	37.7%
5년	16,200,000	6,575,643	0	0	40.6%
7년	22,680,000	10,068,000	0	0	44.4%
10년	32,400,000	14,976,000	0	0	46.2%
15년	48,600,000	23,069,500	0	0	47.5%
19년	61,560,000	30,068,500	0	0	48.8%
20년	64,800,000	74,035,800	8,226,200	8,226,200	126.9%
21년	64,800,000	66,856,112	8,357,013	16,583,213	128.8%
22년	64,800,000	59,431,023	8,490,146	25,073,359	130.4%
23년	64,800,000	51,753,709	8,625,618	33,698,977	131.9%
25년	64,800,000	53,422,779	0	33,698,977	134.4%
30년	64,800,000	57,873,799	0	33,698,977	141.3%
35년	64,800,000	62,778,735	0	33,698,977	148.9%
40년	64,800,000	68,105,837	0	33,698,977	157.1%

<sup>※</sup>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 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sup>※</sup> 저해지기간(다만, 저해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0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교육자금보너스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sup>※</sup>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계약의 기본해약환급금 X

- 해지지급률(50%)」에 추가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 부가된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예시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위의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과 교육자금누계액의 비율입니다.
- ※ 교육자금 지급대상 보험가입금액을 교육자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매년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여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교육자금으로 지급합니다.
- ※ 위의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보험가격지수

# 문: 보험가격지수란?

- 답: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 격지수"라고 합니다.
-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상품명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u>080</u>	(세)	(년)	(년)	남자 여자	여자	(만원)
저해약환급금형,표준체	40	종신	20	153.3%	160.8%	10,000
일반형,표준체	40	종신	20	135.2%	141.4%	10,000